

1. 당사자

- 업체명 : 고려기계
- 대표자 : 이**
- 최종주소 : 부산광역시 사상구 *** ***** **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

3. 처분의 원인 사실 :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

4. 법적근거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

5. 의견제출처 :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

(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, ☎ 02-748-5366, 담당자 장윤정)

6. 의견제출기한 : 2020년 7월 27일(월)

●환경부공고제2020-629호

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환 경 부 장 관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179호, 2020. 3. 31. 공포, 2020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(안 제3조제8항, 제9조제7항, 제17조의2제7항)

-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,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

나.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, 방법(안 제17조의5, 별표2)

-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상정보,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

다.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(안 제17조의6)

-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,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

라. 과징금 부과를 위한 ‘부적정처리이익’ 산정방법을 규정(안 제19조의 4)

-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수출시에는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에서 수입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뺀 값으로 하고, 불법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받은 처리비용과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의 합으로 함

마. 수출입 허가·신고 취소절차를 규정(안 제15조의2, 제17조의7)

- 수출입 허가·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·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

바.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(안 제19조의3)

- 위반자 성명 및 주소, 위반사항,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

사. ‘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’ 지정 및 운영(안 제19조의7)

-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,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관련기관, 폐기물수출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제출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자원순환정책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(전화 : 044-201-7349, FAX : 044-201-7347, 전자우편 : sanghyukan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630호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9조 및 「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(환경부고시 제2019-99호, '19.6.11)」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(2020년 5월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환 경 부 장 관

2020년 5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

수 계 (35)	지 점	하천중권역 목표기준		BOD				TOC				Cd, As, Pb, CN, Cl ⁻ , Hg, 페놀류
		중권역명	목표기준	'19평균	'195	'204	205	'19평균	'195	'204	205	
		(단위 : mg/L)										
북한강 (4)	소양강2	소양강	I a	0.3	0.3	0.3	0.3	1.5	1.4	1.3	1.4	불검출
	의암댐	의암댐	I a	1.1	1.3	1.3	2.2	2.3	2.4	2.2	2.9	"
	공지천2*	의암댐	I a	2.5	3.5	1.6	4.5	4.0	4.5	3.1	5.1	"
	삼봉리	청평댐	I a	0.9	1.1	1.2	1.1	1.9	1.9	2.0	1.8	"